

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1. 계획의 의의

□□ 개념

-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(Rolling Plan)

□□ 제도운영의 필요성

- 중·장기적 시계에서 구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, 구 재정운용의 기본자료로 활용
- 단년도 예산편성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,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국가와 우리구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
□□ 근거규정 및 연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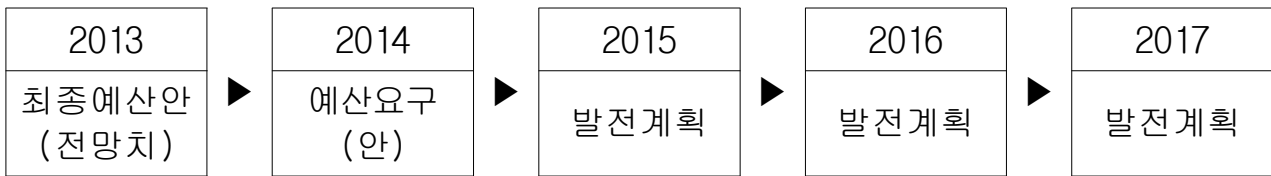
- '88년 :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
- '93년 : 연동화계획으로 운영
- '95년 :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, 협의 추진
- '05년 : 수립시기를 상반기(4월)에서 하반기(11월)로 조정
- '07년 :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
[관 련 근 거]

-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) :
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계획을 수립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) :
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재정지원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청

2.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

□□ 계획기간 : 2013 ~ 2017년 (5년)



□□ 계획대상

- 대 상 :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(기금 제외)
- 기 준 : '13년도 최종예산안(잠정계상)을 기준으로 하되,
'14년 이후는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

□□ 주요내용

- 재정목표 :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
- 재정전망 : 세입·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전망
- 투자계획 :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시

□□ 계획방향

- 「안전행정부 2013~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 및 「부산시 2013~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」에 의거 계획 작성

-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,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·반영
-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·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- 2012~2016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 요인을 점검하고,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수립

□□ 계획수립 체계

- | | | |
|---|--------|---|
| ① | 안전행정부 | ▪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, 자치단체 시달 |
| ② | 지방자치단체 | ▪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(안) 수립 |
| ③ | 지방자치단체 | ▪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|
| ④ | 지방자치단체 | ▪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,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
▪ 지방의회 보고 후 안전행정부에 제출 |
| ⑤ | 안전행정부 | ▪ 전국 계획 종합, 관계부처 협의 |
| ⑥ | 안전행정부 | ▪ 국무회의 보고, 중앙부처·자치단체 송부 |

-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·확정하여,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
- 안전행 정부는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

